

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7. 6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본문 내용 대부분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례제명을 토론의 유형에 해당하는 포럼이라고 한 것은 위원회 조례제정 목적에 상반되는 용어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
- 안 제3조중 위원회 위원을 「각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」 등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지원관계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
- 안 제7조중 회의 운영을 필요시에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명과 조례 내용중 “포럼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
- 안 제2조 「용어의 정의」 조항 전체 삭제
- 안 제3조제2항중 “각분야별”을 “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”로 하였으며
- 안 제7조제1항중 회의 운영을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
- 안 제11조제1항제2항중 “정책개발 담당주사”를 “업무 담당주사”로 수정하였음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
- 「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규정」

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명중 “포럼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

안 제1조중 “포럼”을 “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

안 제2조를 삭제하고

안 제3조제2항중 “각분야별”을 “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분야별”로 한다

안 제3조제3항 별지서식 위촉장 내용중 “포럼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

안 제7조제1항중 “운영한다”를 “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

안 제11조제2항중 “정책개발”을 “업무”로 한다

안 “제3조 내지 제13조”를 각각 “제2조 내지 제12조”로 한다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	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연구와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..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“구미시정책연구포럼”이라 함은 정책의 연구 및 평가, 자문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.	(삭 제)
제3조(구성) ①(생략) ②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(생략)	제2조(구성) ①(원안과 같음) ② 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 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 ③(원안과 같음)
제4조(기능) (생략)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(생략) 제6조(회의) (생략)	제3조(기능) (원안과 같음) 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(원안과 같음) 제5조(회의) (원안과 같음)
제7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.	제6조(회의) ①.....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 ②(원안과 같음) ③(원안과 같음) ④(원안과 같음)
②(생략) ③(생략) ④(생략)	제7조(위원회 운영) (원안과 같음) 제8조(연구과제 선정) (원안과 같음) 제9조(연구수행 및 협력) (원안과 같음) 제10조(수당 등)① (원안과 같음) ②..... 업무 ③(원안과 같음)
제8조(위원회 운영) (생략) 제9조(연구과제 선정) (생략) 제10조(연구수행 및 협력) (생략) 제11조(간사 등)① (생략) ②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정책 개발 담당주사가 된다. ③(생략)	제11조(수당 등) (원안과 같음) 제12조(시행규칙) (원안과 같음)
【별지서식】	【별지서식】
위 축 장	위 축 장
소 속 성 명 귀하를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임할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구 미 시 장	소 속 성 명 위원회 년 월 일 구 미 시 장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【별지서식】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,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
2.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
3.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시책 자문
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포럼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연구과제 선정)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, 정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개발부서 및 업무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연구수행 및 협력) 위원장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, 담당공무원의 연구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또한 시장은 필요시 전문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【별지서식】

위 촉 장

소 속
성 명

귀하를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
수임할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
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구 미 시 장